



기술표준원고시 제 2006 - 65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험항목추가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고시의 K60127-1, K60127-2, K60691의 개정 내용은 2007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형퓨즈 등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K60127-1 소형퓨즈 제1부 -소형퓨즈의 정의 및 소형퓨즈링크의 일반요구사항”
안전기준의 전면개정

※ 불임 개정기준 및 비교표 참조

나. 안전기준 “K60127-2 소형퓨즈 제2부 -통형퓨즈링크” 안전기준의 전면 개정

※ 불임 개정기준 및 비교표 참조

다. 안전기준“ K60691 온도퓨즈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안전기준의 전면개정

※ 불임 개정기준 및 비교표 참조

※ 불임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기술표준원소식 → 고시·공고의
448번 참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270호

공산품안전관리 운용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 제정안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법률7742호 2005. 12. 23. 공포)되어 공산품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내용과 시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인증기관의 공산품안전관리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나.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공장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인증기관의 공장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품목의 다른 모델에 대하여 제조 및 검사 설비가 같으면 공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른 경우 동일공장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 안전인증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 별도의 로트검사를 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출고 또는 통관전에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되었을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붙임 :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 제정안(관보게재시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전화 : 02-509-7247, FAX : 02-509-7302, E-mail : yoonkeun@ats.go.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기술표준원소식 → 고시·공고(451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027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제규격(IEC)과 부합화하여 적용 중에 있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역 오류 및 오자·탈자 등을 바로잡고, 방송기기의 전자과장해 시험에서 조난주파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3] 전자과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262(전기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를 [별표3]전자과적합성강제적용안전기준에서 [별표2]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변경하고, 전자악기 등 일부항목 삭제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나. [별표3] 전자과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3(음성, 텔레비전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

기류의 무선 방해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과 한계치)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음성과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으로 변경하고, 번역오류, 오자·탈자 수정 및 4.5항 방사방해 표4 조난주파수 예외적용을 삭제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다.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4-1(전자기적합성-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1부: 전자파장해)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제1부: 전기자기장해”로 변경하고, 4.1항 연속성잡음에서 PLC 내장제품의 경우 시험방법 및 처리기준을 추가하고, 4.1.2.4항에 “PLC 제품등 본 규격 이외의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다기능기기의 경우 별도의 규격이 제정 될 때까지 해당기기의 의도된 주파수 부분에서의 한계값은 해당 기기에 적합한 기준치를 만족하거나 그에 합당한 인증을 받은 경우 본 규격에서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추가를 하고, 4.1.2.4항의 잡음전력의 한계값 적용예외 제품을 (9kHz이상 클럭발생기 또는 내부주파수)을 명확하게 표기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라.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5(조명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에 대한 한계치와 측정방법)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으로 변경하고, 4.3항 표2a의 전원단자전압 준첨두값(평균값) 측정은 “150 kHz ~ 0.5 MHz에서 66 ~ 56(56~46)dB μ V, 251 MHz - 3.0 MHz에서 73(63)dB μ V, 30 MHz ~ 5.0 MHz에서 56(64)dB μ V”를 “150kHz ~ 0.5 MHz에서 66 ~ 56(56~46)dB μ V, 0.5 MHz ~ 5.0 MHz에서 56(46)dB μ V”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주)a 주파수 대역은 무전극램프 및 무전극조명기기에 있어서 251 MHz ~ 30 MHz의에서 준첨두값은 73 dB μ V, 평균값은 63 dB μ V를 적용하며, 4.4항 표3 방사장해 측정은 “150 kHz

~ 22 MHz에서 58 ~ 26 dB μ V, 22 MHz ~ 30 MHz에서 58 dB μ V를 “150 kHz ~ 30 MHz에서 58 ~ 26 dB μ V”로 변경하였으며, 무전극램프 및 무전극조명기기에서는 22 MHz ~ 30 MHz에서 58 dB μ V를 적용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마.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0(라디오, 텔레비전수신기 등 방송수신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기준)의 기준명을 “라디오, 텔레비전수신기 등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으로 변경하고, 번역오류, 오자·탈자 수정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바.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2(정보기술장치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한계치와 시험방법)의 기준명을 “정보사무기기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한계값”으로 변경하고, 52항 표4의 “주3) 잠정적으로 6 MHz ~ 30 MHz 주파수 대역에서는 고밀도 스펙트럼 고속서비스를 위해 10 dB가 완화 된다. 그러나 그 완화 조건은 신호의 케이블에 의해 변환된 공통모드 방해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62항 1GHz 이상에서의 한계값에 관한 항목과, 시험방법 추가 및 “적용 고려중” 문구 삽입하며, 83항 시험배치에 벽 고정 제품에 대한 시험조건 추가, 8.41항 다기능 기기의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추가, 9항 시험품의 배치 및 11항 측정 불확도 조건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사.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4(전자파적합성(EMC), 정보기기 - 내성 특성 - 한계치 및 측정방법)의 기준명을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 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으로 변경하고, 부록 A 통신단말기의 시험조건 및 시험기준을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아.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547(일반조명 목적을 위한 조명기구 EMC내성요구사항)의 기준명을 “일반 조명기기 -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으로 변경하고, 57항의 서지 시험적용 방법 변경 AC전원포트에서의 시험레벨이 “선간 05 kV, 선과 접지간 10 kV”를 “안정기내장형램프와 유사-조명기기는 선간 05 kV, 선과 접지간 10 kV”와 “조명기기와 독립적인 보조기기는 입력전력이 25 W 이하의 제품일 경우 선간 05 kV, 선과 접지간 10 kV”, “입력전력이 25 W보다 큰 제품일 경우 선간 10 kV, 선과접지간 20 kV”인가로 변경 하고, 6.3.3 조명기기의 표 15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의 적용에서 방전램프용 전자식 안정기틀 갖는 조명기기의 성능평가기준(전도내성)이 A에서 B로 변경, 비상등용조명기기의 성능평가기준(정전기내성)이 B에서 A로 변경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자.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2(전자파적합성(EMC), 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제2절 :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방법-제2절 정전기방전 내성시험”으로 변경하고, 7.1.3항 비접지 기기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8.3.1항 시험품에 직접 방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그림 8, 9 비접지 탁상형/바닥형 기기에 대한 시험배치를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차.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3(전자파적합성(EMC), 제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제3절 : 전자파 방사 내성시험)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제3절 : 전기자기방사 내성시험”으로 변경하고, 5항 시험레벨에서 4등급(30 V/m)을 추가하고, 시험주파수를 “80 MHz ~ 1000 MHz”에서 “80 MHz ~ 6 GHz”로 변

경하고, 부록 C 세부내용 규정, 부록 D의 TEM 셀과 스트립라인이 삭제되고 부록 D 증폭 기이 비선형성과 62절에 따른 교정 절차 예가 추가되고, 부록 H 1 GHz 이상 주파수에 대한 노출방법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카. [별표3] 전자과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4(전자과적합성(EMC), 제4부 : 시험과 측정기술, 제4절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EMC기본규격)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제4절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으로 변경하고, 5항 시험 레벨의 표1. 개방회로 출력 시험 전압과 임펄스의 반복율을 “5 kHz”에서 “5 kHz 또는 100 kHz”로 변경하고, 61항 시험 발생기 요구조건 추가, 63항 용량성 결합클램프 용량을 50 pF ~ 200 pF에서 100 pF ~ 1000 pF로 변경하며, 73.11항 시험배치에서 시험품의 전원선 길이를 1 m에서 $0.5\text{ m} \pm 0.05\text{ m}$ 로 변경하며, 8항 시험절차를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타. [별표3] 전자과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6(전자과적합성(EMC), 제4부 : 시험과 측정기술, 제6절 : 전자파전도 내성시험-EMC기본규격)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제6절 : 전기자기장 전도내성시험”으로 변경하고, 62.1항 결합 및 감결합 회로망(CDNs)을 세항으로 분리 하였으며, 62.3항 직접주입 장치 추가, 75항 직접주입을 위한 절차 추가하고, 7항 장착되는 시험품의 높이를 실제 설치되는 높이로 시험에 적용하며, 73항 공통모드 임피던스 요구 조건들이 부합되는 경우의 클램프 주입을 위한 절차 추가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파.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10001(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의 전기자기적합성 부분에서 내부회로를 SMPS형태와 기타로 분리하며, SMPS형은 K00022과 K00024를 적용하고, 기타는 K00014-1, 14-2를 적용함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하.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4-2(전자파적합성-가정용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류에 대한 요구사항, 제2부 : 전자파 내성-제품군 규격)의 기준명을 “전기자기적합성(EMC)-가정용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제2부: 전기자기내성 - 제품군규격”으로 변경하고 번역오류, 오자·탈자 수정

※ 오타수정 등의 사항은 별첨의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내용
(신·구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6. 12. 14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watsgokr> 